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404-300)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 2F / Tel. 032) 567-3566 / Fax. 032) 567-3565 / www.gumdan3.com

문서번호 : 검단3구역 2022 - 49 호

2022. 03. 30.

수 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참 조 :

제 목 : 검단3구역 구역 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에 따른 선하지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 통지

1. 귀 닥(사)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 시행하는 “검단3구역 구역 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보상대상 토지명세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 붙임 1.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문 참조

나. 보상대상 토지 등 내역 : 붙임 2.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참조

다.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1) 열람장소

-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인천시 서구 단봉로 40-1, 2층(오류동)

(전화 : 032-567-3566, 팩스 : 032-567-3565)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 (전화 : 032-560-5773)

라.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 2022. 3. 31 ~ 2022. 4. 15.

붙임 : 1.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문 1부.

2.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1부. 끝.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검단3구역 구역 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 선하지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50호(2020. 2. 24)」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된 「검단3구역 구역 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나. 명칭 : 검단3구역 구역 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
- 다. 사업시행자 :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정성기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 2층(오류동)
- 마. 사업의 내용
 - 사업 면적 : 2,465m²
 - 사업 구간 : 154kv 경서-양촌 NO.16 ~ NO.19
 - 사업 규모 : C/H 철탑 2기, 송전선로 지중화(L=1,425m)
 - 사업 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 10. 31(준공예정일)

2. 보상대상 토지명세

보상대상 토지명세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보상계획 열람장소 및 기간 등

가. 열람장소

-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 2층(오류동)
(전화 : 032-567-3566, 팩스 : 032-567-3565)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 (전화 : 032-560-5773)

나. 열람기간 : 2022년 3월 31일 ~ 4월 15일 (15일간)

(열람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대상 토지조서(명세)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2022년 5월 예정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조서(명세),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다만, 관할 시장과 물건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물건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후 해당 토지에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또는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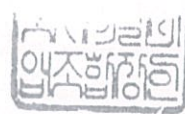
동법 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나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보상관련 공지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도메인 www.gumdand3.com)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